

유학생상담센터 규정

제정 2020. 11. 9.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센터는 국제협력원 부속 유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센터는 각 항의 목적으로 한다.

- ① 고충 및 학업 상담, 생활 적응을 필요로 하는 유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본 규정은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3조 (소재지) 본 센터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운영) 본 센터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운영한다.

- ①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 증진을 위한 활동
- ② 정기적인 유학생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, 생활 어려움 상담
- ③ 상담 이외에 유학생의 생활 및 환경적응에 필요한 사항의 기타 지원관리
- ④ 기타 유학생 상담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예산 및 운영

제5조 (예산) ① 본 센터의 예산은 대학 교비예산으로 충당한다.

제6조 (세부규정) ① 본 센터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협력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이를 기록 유지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